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불합리한 행정사무 분장사항 조정을 통해 업무 효율을 제고하고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행정사무 분장사항 조정(안 제4조, 안 제14조)

- 성산동고분군전시관 운영·관리 : 시설관리사업소 ⇒ 문화관광과
- 야생동물 보호, 수렵면허증 발급·관리 : 산림과 ⇒ 환경과
- 성주생활체육공원 운영·관리 : 새마을체육과 ⇒ 시설관리사업소

○ “호적”용어를 “가족관계등록”으로 변경(안 제16조)

- 폐지된 호적법 상의 용어인“호적”을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“가족관계등록”으로 용어 변경(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제122조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, 별첨 1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입법예고 : 2019. 11. 7.~2019. 11. 12, 이상없음

○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○ 성별영향평가 : 제외대상(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」제2조제2항제3호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사무 분장사항 조정을 통해 업무 효율을 제고하고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○ 행정사무 분장사항의 조정,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,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고, 행정사무 분장 조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